

자유의 도구로서 바라본 전자감시

-재판 전(Pretrial Release)* 구금완화를 중심으로-

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Tool of Freedom

-Based on the Pretrial Detention Mitigation-

신 진 수*
Shin, Jin-Su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자유의 도구로서 본 전자감시 |
| II. 전자감시제도 일반 | IV. 결 론 |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전자감시란 전자발찌, 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 등 특정 범죄인에게 사용되는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가 애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교정으로 단기구금의 폐해를 막고,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통하여 교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보주의와 엄벌주의의 강화로 삼진아웃 등이 등장하면서 교정시설이 급격히 과밀화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조기출소나 가택구금을 통한 형의 집행 등의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미결구금을 완화하고, 보석금을 통한 보석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재판 전 석방의 일환으로 전자감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형사절차의 전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판 전 석방제도는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에 대해 제1단계는 불구속원칙,

투고일 : 2014. 8. 31. / 심사의뢰일 : 2014. 9. 25. / 게재확정일 : 2014. 10. 13.

* 흔히 'Pretrial Release'의 의미는 체포단계부터 재판의 확정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구금을 해제하는 모든 방법을 일컫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판이라 함은 통상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는바, 그렇다면 '판결 전'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나, 기존의 관례가 '재판 전'이란 표현을 주류로 함으로, 본 글에서도 '재판 전'이라는 용어나 '재판확정 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단 여기서의 '재판 전'이라 함은 결국 종국판결, 즉 형의 선고 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Criminology

제2단계는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구금음, 제3단계는 구속을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소하였을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구속 상태의 무죄와 불구속 상태의 무죄선고 인원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구속위주의 수사과 기소, 재판이 형사사법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되어 나온 결과일 것이다. 과연 사법적 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미결구금보다는 형사절차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새로운 도구로 재판 전 석방에 전자감시제도를 도입을 주장한다.

[주제어] 재판 전 구금, 전자감시, 전자발찌, 지역사회 교정, 피고인의 방어권, 공판중심주의

I. 서 론

각 나라마다 운용하는 형사사법의 틀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래 들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전자감시라는 새로운 영역을 형사사법의 세계에도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전자발찌라는 전자감시제도를 보호관찰에 도입하였다.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감시’라는 틀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감시를 억압의 도구로 인식할 필요도 있지만 몇몇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자유’를 향한 도구적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는 똑같은 칼을 살인의 도구로 볼 것인가 의술의 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단순한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자유의 도구로서 전자감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의 형사사법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 영역은 어디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느끼는 피의자·피고인 도주에 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면 이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억압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자감시의 일반적인 기존의 실태와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자유의 도구로서 전자감시의 이용문제, 특히 우리 형사절차에서 적용가능 한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전자감시제도 일반

1. 전자감시의 이해

1.1 전자감시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할 경우에 사회 내 감시와 감독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자감시 자체가 반드시 형의 종료나 가석방등의 형의 확정 후 단계의 국면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된 우리의 정의는, 이를테면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 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 하는 새로운 제재유형¹⁾이라거나, ‘일정한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형벌에 부과된 특정한 조건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전자기제를 통하여 확인하는 형벌 프로그램의 하나²⁾ 라는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의가 틀렸다고 보다는 운용의 범위를 ‘석방된 자’, ‘범죄자³⁾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있어서 내려지는 결론일 것이다.⁴⁾

사범감시망의 확장이 아니라는,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정의를 조합해 보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특정 조건의 부과에 대해 감시하고 확인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⁵⁾

-
- 1)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9집, 한국법학회, 2008.2, 222쪽;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9쪽.
 - 2)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351쪽.
 - 3)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자를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윤지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8권, 한국피해자학회, 2010.10, 75쪽에서는 ‘전자감시제도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시간 동안에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 제한적인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 5) 전자감시란 용어가 옳지 않고 전자감독이란 표현이 더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전자감시란 용어로 통일하도록 한다. 전자감독이란 표현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한영수/강형성/이형섭,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2013, 2-3쪽.

1.2 전자감시의 역사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system)의 개념적 시초는 1964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Ralph Schwitzgebel⁶⁾에 의해 시작되었다.⁷⁾ 쉬비치게벨 교수의 위치추적시스템은 캠브리지 대학과 보스턴 대학의 학생들과 정신병 환자 및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1964년부터 1970년까지 행동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장비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유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었고, 실험자가 쉽게 범죄자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도 파악이 가능했다.⁸⁾

그리고 미국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Albuquerque) 시의 잭 러브(Jack Love) 판사가 1977년 만화 영웅 ‘스파이더맨’에서 악당이 스파이더맨의 손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이러한 행동에서 전자감시를 착안하여, 1983년 보호 관찰 위반자를 상대로 전자감시를 실시하였다.⁹⁾

미국 최초로 계속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84년 미국의 플로리다 주 팜비치카운티(Palm Beach County)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자 그룹으로 정하고 가택구금 프로그램(Home Confinement Program)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게 이른다.¹⁰⁾ 이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1986년에도 그 실시인원이 95명에 불과하였고, 1987년에는 12개 주로 늘어났고, 그 대상도 약 2,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89년에는 37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운영되어 약 6,50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다.¹¹⁾ 1988년에는 미국 32개 주에서 도입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미국의 모든 주로 확장 시행되며,¹²⁾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으로

6) Ralph Schwitzgebel 교수가 현대식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논문이나 단행본 등에서는 Robert Schwitzgebel 교수라고 밝히고 있다. 커다란 고민없이 위 두 인물 중 한 사람만 적시하고 있는바, 이 두 교수는 쌍둥이이며, Ralph Schwitzgebel 교수가 동생이며 먼저 연구를 하였고, 형인 Robert Schwitzgebel 교수가 보완하게 된다. 두 분 교수가 쌍둥이임을 밝힌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최정학, 앞의 논문, 352쪽.

7) 최정학, 위의 논문, 352쪽.

8) 한영수/강형성/이형섭, 앞의 책, 25-26쪽.

9)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교정연구 제42호, 한국교정학회, 2009, 79쪽에서는 전자감시 대상자를 주거침입자라고 하였으나; 한영수/강형성/이형섭, 앞의 책, 28쪽에서는 대상자가 보호관찰 위반자라고 밝히고 있다.

10) Ira J. Silverman, *Corrections—A Comprehensive View 2 ed.*, Wadsworth, 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Inc., 2001, pp.492-493.

11) 정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형사정책연구원, 1999, 185쪽.

12) 허경미, 앞의 논문, 79쪽.

널리 퍼지게 되었다.¹³⁾

위와 같은 역사적 전개를 이어 오던 전자감시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직면하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1995년에 이미 수용자 밀도가 교도소 설계 시 허용 가능한 인원의 62%를 초과하였다. 여러 주가 구치소 내지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축소시킬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 받게 된다.¹⁴⁾

전자감시가 확대되면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은 미국의 경우 오히려 구금에 대한 대안, 사회 내 처우에 대한 필요, 교도소 과밀화 문제해결 등으로 전개되던 것이 잇따른 강력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 범죄자에,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감시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2005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성폭력 흉악범 감시법(The Sexual Predator Effective Monitoring Act of 2005)을 제정하였고,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의 제정으로 성범죄자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¹⁵⁾

1.3 전자감시의 유형

1.3.1 감시장치 방식에 따른 분류

대상자를 감시하는 장치방식에 따라서는, 계속적 신호 장치(또는 연속신호장치, Continuous signaling devices), 계획된 접촉 장치(Programmed contact device), 추적장치(Tracking device)로 나눌 수 있다.¹⁶⁾¹⁷⁾

계속적 신호 장치(Continuous signaling devices)는 통상적으로 3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담배 크기 정도의 발신기(transmitter)로 발목이나 손목에 착용하고 암호화된 신호를 규칙적으로 전송하며, 둘째 발신기의 신호를 받는 자동수화장치(receiver-dialer)로 범죄자의 가정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내보낸다. 셋째는 중앙컴퓨터(central computer)로 자동수화장치에서 발신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들은 범죄자의 통행금지(curfews)나 작업일정 등의 기본 정보와 다를 경우 신호를 발생시킨다. 허가받지

13)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15쪽

14) 이순래/박철현/김상원,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그린, 2011, 431-432쪽.

15) 윤지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학회, 2010, 379-380쪽.

16) Ira J. Silverman, Ibid., pp.493-494.

17) 이와 유사한 분류방식으로는; 문정민, 앞의 논문, 224-225쪽. 이 글에서는 단속적시스템(passive system), 계속적시스템(active system),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나누고 있다.

않은 부재 등의 경우에도 즉시 정보가 발령되어 해당 경찰관이나 감독관에게 알려진다. 이러한 방식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영상감시나 알코올 섭취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

계획된 접촉 장치(Programmed contact device)는 팔찌 또는 음성확인 장치 그리고 중앙 컴퓨터로 구성된다. 컴퓨터는 특정 장소에서 프로그램 된 신호를 송출하게 되는데 이는 범죄자를 짜여진 시간대로 감시하게 된다. 임의적인 시간이나 특정시간대에 모두 신호를 송출할 수 있으며, 팔찌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가 호출할 경우 응해야 하며, 음성확인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음성으로 직접 대답해야 하며, 불일치일 경우 당국에 통보된다.

추적장치(Tracking device)는 원래 야생동물을 추적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다. 이를 발전시켜 범죄자의 정확한 위치를 어느 시간 때나 알 수 있으며, 도시나 시골 기타 방대한 지역도 아우를 수 있다.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주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분류도 결국 능동형이나 수동형이나의 분류방법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2 형사사법단계에 따른 분류

한국의 전자감시는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가석방, 만기출소 시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었고, 이것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에게서는 생소하지만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사법의 일련의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크게 나뉘어서 보면 재판확정 전과 재판확정 후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다.¹⁸⁾ 재판확정 전의 단계는 주로 미결구금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재판확정 후는 수형자 신분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는 재판확정 후의 경우에만 전자감시를 활용하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재판확정 전에도 전자감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형사절차의 단계별로 여러 방식의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초창기 전자감시의 대상자는 범죄 내용이 주로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가 주류였으며 음주운전자나 보호관찰 프로그램 대상자들 중 일부에 대해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도 적용되었다.¹⁹⁾ 각 주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실시배경도 상이하지만 미국

18) 각주 1)에서 밝히 ‘재판 전’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지, 본고에서 말하는 ‘재판 전’의 의미를 바꾼 것은 아님을 밝힌다.

19) 문정민, 앞의 논문, 227-228쪽.

의 보수적인 사법기조가 강화되면서 구금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금 투입의 문제가 대두되어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전자감시제도가 활용되었다.

2. 전자감시제도의 장·단점

2.1 전자감시제도의 장점

전자감시제도의 장점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만기출소나 가석방 등으로 구금이 종료된 특정 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의 일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둘째, 감시와 감독의 강화로 재범률²⁰⁾을 낮출 수 있다.²¹⁾ 셋째, 효과적인 감시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일반 시민의 범죄로부터 공포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전자감시제도의 장점을 예로 들자면, 만약 체포단계나 수사단계 그리고 재판단계 등에서 도입된다면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단기구금의 폐해, 구금시설의 부족이나 열악함에서 오는 세금낭비 등도 개선시킬 수 있다.

2.2 전자감시제도 문제점

2.2.1 전자감시제도의 법적성격에 따른 문제점

우리의 경우 전자감시제도가 징역형 등의 종료 후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연 이것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이냐 형벌로 볼 것이냐가 문제이다.²²⁾

형벌의 성격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목적과 의도, 부착 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로 보면 강한 형벌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재범방지라는

20) 정신교,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2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88-390쪽에서는 전자감시와 재범률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국내는 단기간에 걸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통계상의 차이로 인해 연구자가 유리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1) 허경미, 앞의 논문, 83-84쪽.

22) 물론 보안처분 자체도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독일의 경우는 보안처분에 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배종대, 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1, 92-94쪽 참조.

목적보다는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과 국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피부착자에게 곧 물리적인 침해라는 것이다.²³⁾

보안처분이라는 견해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서²⁴⁾ 첫째,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비행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당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부착명령의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하여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효과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법률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법익 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대법원 판례도²⁵⁾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²⁶⁾

부착대상자별로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²⁷⁾를 살펴보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부착은 기본권 침해가 크므로 독자적인 형벌로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조차 범죄에 대한 응보적 색채를 강하게 담고 있다고 볼 것이다. 가석방이나 치료감호의 가중료로 인한 경우는 보안처분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것인바, 가석방이나 가중료 이후의 감시가 바로 보호관찰의 특별예방적 성격과 일치한다. 그리고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된 경우는 위 두 가지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²⁸⁾ 일괄적으로

23) 정영훈,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결정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Vol. 434, 대한변호사협회, 2013. 6, 128-129쪽; 동일한 의견으로 현재 2012. 12. 27 결정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에서 재판관 송두환의 전부위헌의견임; 최정학, 앞의 논문, 365-366쪽도 형벌성에 대한 의심을 기술하고 있다.

24)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결정.

2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 판결 등.

26) 동일한 내용으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등 참조.

27) 이인영, 앞의 논문, 917-918쪽.

28)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

법적성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부착대상자별로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재판확정 전 전자감시제도가 실시된다면 기존의 개념으로 법적성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2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자감시제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사생활의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GPS방식의 감시는 대상자의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내밀한 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그 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뿐더러, 그 가족까지도 감시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²⁹⁾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적지 않아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³⁰⁾

물론 이 점에 관하여 전자감시가 보안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면 사생활의 침해는 제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과도한 사적영역의 침해는 아니라고 한다.³¹⁾ 과도한 침해인지에 관하여 과잉금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 전자감시를 받는 대상 범죄인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전자감시 처분의 내용이 범죄에 따른 책임 혹은 처분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³²⁾

기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감시 장치의 결함 및 장비불량 및 컴퓨터 해킹 등의 문제, 그리고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비 손상으로 인한 감시 공백, 무엇보다도 피감시자의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한 재사회화에 대한 실질적인 불가능을 꼽을 수 있다.³³⁾

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145-150쪽: 여기에서는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29) 문정민, 앞의 논문, 232쪽. 그리고 233쪽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시설 내 구금보다 사회 적응 기회도 더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전자감시가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기회로 선택권이 부여 된다면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오히려 후술할 재판 전 구금해지와 더불어 행하는 전자감시에 더 어울리는 장점이다.

30) 최정학, 앞의 글, 357쪽.

31) 황일호, “사회 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교정연구 제44호, 한국교정학회, 2009, 21쪽.

32) 최정학, 앞의 논문, 357-358쪽.

33) 허경미, 앞의 논문, 84-85쪽.

3. 한국의 전자감시

3.1 입법과정

형사사범의 단계를 전자감시의 활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형사절차의 흐름상 반드시 형 확정 이후에만 전자감시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도 특정범죄를 일으키는(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사람들에게만 협소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 초창기 성범죄자를 염두해 두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9살 소년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플로리다 주는 성범죄자의 등록과 GPS를 통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을 만들게 된다.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통상 이러한 법들은 학교나 공원의 일정거리 내에서 성범죄자 전과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³⁴⁾

우리의 경우 성폭행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대적 상황과 언론환경,³⁵⁾ 사회적분위기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5년 7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대표발의)’이 만들어 졌으나 제정되지는 못하였다.³⁶⁾ 그러다가 2006년 2월 용산에서 11살 초등학생 허 모양이 같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인 김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김 모 씨는 전과9범으로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이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이에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

34) 문정민, 앞의 논문, 228쪽.

35) 김태명, “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0-32쪽. 언론이 범죄를 보도하는 태도는 범죄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극적으로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서 일탈과 위험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심을 가중시켜 권위주의적 통제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확대 포장되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다.

36)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47-650쪽 참조.

3.2 전자감시법의 제정과 개정

우리의 경우 최초로 전자감시가 도입된 것은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³⁷⁾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³⁸⁾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5월 8일 미성년 대상의 유괴 범죄를 전자감시 대상자로 확대하고 그 범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0년에는 2009년 9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소급적용³⁹⁾과 살인범죄도 전자감시가 가능하도록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전자장치의 착용기간도 30년⁴⁰⁾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차등화 하였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였다.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장치의 수신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37)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451쪽.

38) 이 법의 원래 시행일은 2008. 10. 28.이었으나 법률의 제정 후 2007. 12. 제주 초등학교 여학생 피살사건, 2008. 3. 안양 초등학교 피살사건 등으로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주문되었고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2008. 5. 22. 개정되어 시행 일자를 동년 9. 1.로 앞당기게 되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제정법률에서 5년이던 것을 법률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또한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이 있다. 김혜정, 앞의 논문, 652-653쪽.

39)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배경에는 2008. 12. 조두순사건, 2010. 2.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한 김길태사건 등이 있다.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01-936쪽 참조.

40) 동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최대 45년이 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경과 규정 등으로 강도법에 대하여는 2014년 6월부터 재범 이상의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등의 전자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타법 등의 개정으로 작은 변화는 있어 왔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12월 18일 개정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1〉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의 연혁⁴¹⁾

법률연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 2007. 4. 27. 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9. 5. 8.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개정
대상범죄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공통요건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Ⅲ. 자유의 도구로서 본 전자감시

우리의 전자감시제도는 재판확정 후를 중심으로 체계를 확립하여 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하여 전자감시가 주는 어감은 다분히 감시와 억압의 새로운 기술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자감시라는 제도가 등장한 것은 특정범죄자만 감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자감시의 태동은 오히려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고 단기 자유형이 주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였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들을 개선하고 진화시켰다. 또한 신용보주의 강화와 함께 구금시설의 확장에 대한 대안이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엄벌주의 요구가 감시의 강화와 확대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자감시라는 도구 자체만 놓고 본다면 반드시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임을 내세우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도 조화될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에게 방어의 보장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찾아가는 데

41) 이인영, 앞의 논문, 908쪽.

많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사용한다면 우리 형사법에도 진일보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재판 전에 전자감시제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의 경우 활용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비교법적 검토: 재판 전 전자감시를 이용한 구금해지

1.1 미국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절차의 모든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주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재판확정 전의 영역만 놓고 보면, Pretrial Release라는 이름으로 미결구금을 해지하거나 애초에 미결구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보석제도가 잘 정착되어져 있다고 알려졌지만 Financial Types of Pretrial Release(보석금이 수반되는 석방)방식이 경제적 약자와 소수인종, 흑인, 히스패닉에게는 부담이 가중되어 차별의 문제가 나타났다.⁴²⁾ Nonfinancial Types of Pretrial Release(비경제적 방식의 석방) 중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전통적인 Home Confinement(가택구금)과 전자감시가 결합한 형태가 보석의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⁴³⁾

1.2 영국

영국은 1987년 내무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1989년 미결구금 단계에서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하는 최초의 시범실시가 개시되었다. 2002년에는 보석법(The Bail Act 1976)에 의하여 12세에서 16세의 피의자 그리고 17세의 피의자에 대한 별도의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다. 영국의 경우 전자감시는 재판중의 보석형 선고 시의 단기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가석방 등과 연계된

42)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8조는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보석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43) Philip L. Reichel, *Corrections-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Allyn & Bacon 2 edition, 2001, pp.267-270.

형사절차의 전 영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⁴⁴⁾

1.3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의 명문에 전자감시를 규정하고 있고, 영국과 유사하게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으로서 가택구금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제1항에서 불구속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예심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보안조치를 목적으로 예심수사피의자를 사법통제에 둘 수 있고, 그것으로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자감시에 부쳐 가택구금 한다.”, 제3항에서는 “전자감시를 부친 가택구금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구속의 최소화를 위해 제1단계는 불구속 원칙을, 제2단계는 전자감시를 이용한 가택구금을, 제3단계에는 예외적 구속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에 관한 제144조에서도 전자감시 다음 단계로 예외적인 구속을 명시한다.⁴⁵⁾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2-5조 내지 142-13조는 우리나라 법전 편성 방법으로 분류하자면 별도의 관(款)을 두고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이란 제목 아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감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청이 있으면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이 명령이 내려지고 여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체포·구인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전자감시는 6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최대 24개월 까지 가능하다. 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미결구금일수 산입 시 전자감시하의 가택구금은 구속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불기소, 무죄, 또는 형의 면제 등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⁴⁶⁾

2. 우리나라의 재판 전 탈구금 전략

형사사건의 대략적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급하고 수사가 마무리

44) 한영수/강형성/이형섭, 앞의 책, 48-56쪽.

45) 법무부, 프랑스형사소송법, 법무부, 2011, 116쪽, 127쪽.

46) 법무부, 위의 책, 124-126쪽.

되면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공판단계로 진행되고 유·무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후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된 판결에 따라 그 형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전자감시제도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을까?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금을 피하거나 석방시킬 수 있는 출구를 살펴보기로 하고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1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⁴⁷⁾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형식적심사제도 즉 검사가 송부한 서류나 자료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판사의 면전에서 심문의 기회를 갖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영장제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구속사건을 실질심사 하는 것은 아니어서 2007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 시 모든 구속사건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도입하게 되었다.⁴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속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구속자 변화 추이와⁴⁹⁾ 무죄현황⁵⁰⁾

	처리인원	구속인원	구속비율(%)	1심무죄(명)	2심무죄(명)
2008	1,787,657	39,987	2.2	167	71
2009	1,750,661	41,180	2.4	223	102
2010	1,384,690	27,676	2.0	190	110
2011	1,259,096	24,431	1.9	163	87
2012	1,320,630	24,410	1.8	202	116

47) 손동권/신이철, 새로운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256쪽.

4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344쪽.

49) 법무부, 범죄백서 2013, 법무부, 2014, 192쪽 참조.

50) 구속자를 기준으로 한 무죄를 말하며 1심 무죄는 제1심 선고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을 말하고, 2심 무죄는 항소심 선고사건 중 원심에서 유죄(무죄포함)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무죄현황에 관한 자세한 통계는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검색일: 2014.8.30.

위의 표를 보면 구속비용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속사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죄선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에서 말하는 무죄는 전부무죄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부분 무죄를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동일 기간에 불구속공판의 경우 무죄를 선고 받은 인원을 보면 제1심의 경우 2008년 1,740명, 2009년 2,027명, 2010년 2,274명, 2011년 2,187명, 2012년 2,336명을 나타낸다. 제2심 불구속공판의 경우 2008년 1,095명, 2009년 1,150명, 2010년 1,093명, 2011년 1,058명, 2012년 1,026명을 보이고 있다.⁵¹⁾

단순히 인원만을 비교하면 구속과 불구속 무죄인원이 거의 10배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수사와 공소제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지속되었다면 그만큼 무죄율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무죄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 시 도주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영역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을 보장하고 아울러 공판에 더욱더 많은 소송자료를 제출케 하여 피고인 검사, 법원 모두 밀도 있는 재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2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⁵²⁾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에서 유래되는 제도이다. 인신보호영장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제시

51) 위의 각주와 동일한 인터넷주소 참조.

5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269쪽.

하라는 법원의 영장을 말한다.⁵³⁾ 이 제도는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피구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으로서 이를 통해 구속의 적법여부만 심사한다. 구속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적부심제도와는 다르다.⁵⁴⁾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⁵⁵⁾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충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석방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⁵⁶⁾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석방결정서는 명령장의 성격을 가진다.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고(동조 제6항),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42조).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도주우려 때문에 구속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강력사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속율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2.3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5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91쪽.

54) 손동권/신이철, 앞의 책, 277-278쪽.

55)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56) 이른바 전격기소란 체포·구속된 피의자측의 적부심사청구에 기하여 법원이 적부심사에 임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법적지위가 변화한다. 전격기소와 체포·구속적부심 관할법원의 계속심사 가능성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검사가 일단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적부심법원의 심사권한이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 3. 25. 2002헌바104 결정에서 전격기소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왔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378-379쪽 참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실무상으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의자·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⁵⁷⁾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법원의 구속영장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 논리적으로 보면 즉시항고는 동법 제409조에 의해 제기기간이 3일이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동법 제410조). 이런 논리는 결국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정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 나게 된다.⁵⁸⁾ 이 위헌결정의 이면에는 결국 도주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일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일시 석방되어 도주할 경우 엄청난 여론의 비판과, 수사와 공소유지, 재판까지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구속집행정지를 어떻게든 허용치 않으려는 것이다. 때로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사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⁵⁹⁾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자체에 관한 순수한 통계는 경찰백서나, 범죄백서, 사법연감 등에서도 쉽게 그 통계를 찾아볼 수 없었고, 2010년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688명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중 83명이 도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⁰⁾ 최근의 경우 ‘세월호 사건’으로 유병언 씨의 장례식에 구속된 일가족의 참석 여부를 놓고 도주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전자감시제도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활용되어 도주

57) 이은모, 앞의 책, 310쪽.

58)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59) 뉴시스, “재계총수 구속집행정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0_0012299728&cID=10201&pID=10200>, 검색일: 2014.8.22.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가 특권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나,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은 합법적 탈옥 등으로 구금을 회피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본 글에서는 재판확정전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지만,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전자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60) 헤럴드경제, “구속·형집행기간 도망자 급증”,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01007000184>, 검색일: 2014.8.20.

우려를 상쇄시킨다면 검찰과 법원 모두 도주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 보다 인도적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0월 3일 국정감사 시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사망한 수용자가 85명에 이르고, 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수용자가 19명, 불허가로 인하여 병사가 5명에 이르고, 일당 5만 원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망한 수용자도 9명에 이르고 있다.⁶¹⁾이 모든 경우가 대부분 도주 우려라는 이유 때문에 불허된 것이어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2.4 보석

보석이란 일정한 보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의의 구속집행정지에 속한다. 다만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석은 보증금의 몰수라는 경제적 고통으로 하거나 다양한 출석담보수단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속의 집행정지라고 할 수 있다.⁶²⁾

피고인의 구속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판절차 및 형 집행에의 출석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 예치나 기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 보석제도의 취지이다. 보석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무죄추정의 권리에서 유래하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며,⁶³⁾ 미결구금에 수반되는 국가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고, 형사정책적으로는 구금에 의한 악영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가진다.

보석은 영미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대륙의 형사소송에서는 가진 자의 특권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운용되면서 한편으로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구속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61) 중앙일보, “옥중사망 10명 중 셋은 형집행정지 신청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62148>, 검색일: 2014.8.20.

62) 이재상, 앞의 책, 282쪽.

63) 신동운, 앞의 책, 1046-1047쪽.

써 함께 사용되고 있다.⁶⁴⁾

보석에는 보석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이 있다. 그리고 보석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유무에 따라서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으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청구보석 및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⁶⁵⁾ 반면에 임의적 보석은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너무 광범위하여 보석제도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⁶⁶⁾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보석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다만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⁶⁷⁾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 제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규칙 제55조의2).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⁶⁸⁾ 형사소송법 제98조가 명시하고 있는 여러

64) 이은모, 앞의 책, 300쪽.

65)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6) 손동권/신이철, 앞의 책, 285-286쪽.

67) 이재상, 앞의 책, 288쪽.

68)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특히 보석보증금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함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9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수사가 마무리 되고 기소가 된 이후 제1회 공판기일이나 증거개시 이후에는 사실상 증거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도주우려라는 측면에서 구금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판에 피고인 소환이 확보되는데 지장이 없다면 미결구금의 당위성은 감쇠되기 마련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필요적 보석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상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공소제기 후에는 추가 수사과 구금의 확보라는 목소리가 높아서일 것이다. 2012년 보석에 관한 통계⁶⁹⁾를 보면 1심의 보석의 경우 총 6,247건에 대한 보석재판이 있었고 그중 신청에 의한 보석이 6,168건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보석이 192건이었다. 신청한 6,168건 중 인용이 2,414건이고, 기각이 3,666건, 기타사유가 88건으로 파악된다. 기각사유가 명확히 들어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재산범죄 사건을 중심으로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인용률이 증가할 가망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실업상태가 지속되어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어떠한 도움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어서 실행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하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자감시제도가 피고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도 가능하게 되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현재 형사소송에서 문제 중 하나는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자의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검사의 피고인 소환은 큰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권의 확보라는 차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사이에는 일부 보강수사가 가능할지라도,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검사의 무분별한 피고인의 소환은 반드시 수소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법 규정도 이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들은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69)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3, 944쪽.

검사의 소환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으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결국 보석제도 활성화가 확보된다면 무리한 수사로 인해 방어권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범죄율이 높으면 당연히 구금된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⁷⁰⁾ 결국 구금의 확장과 축소는 사법적 정의라기보다는 형사정책의 문제이며 이는 곧 입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구금을 확보하려 하고, 법원의 입장도 구속사건의 경우 재판 중에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의 관행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특히 도주우려라는 구금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전가의 보도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였다. 구속의 초기단계부터 출구전략을 만들고 재판 중에도 끊임없이 구금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으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 전자감시, 구속이라는 3단계 방법을 우리도 도입한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도입할 내용을 살펴보면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피의자 보석, 피고인보석 등 모든 지점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도주우려가 없으면 전자감시를 이용하여 구속을 하지 않거나 해지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특히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전자감시를 통한 필요적 보석이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감시

70) Michael Tony & Richard S. Frase, *Sentencing and Sanctions in Western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pp.3-28; 이 연구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94년까지 30년간 미국, 독일, 핀란드 세 나라의 인구 100,000명당 범죄인구, 피구금자, 살인사건을 조사해보니 공통적으로 범죄인구는 미국은 약 5배, 독일과 핀란드는 약 3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구금인원은 미국은 약 3배가 증가했고 독일과 핀란드는 소폭 감소했다. 구금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정의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라 할 것이다.

를 이용할 경우 가택구금이 일차적 방법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 학업, 치료 등의 목적의 경우 반드시 가택구금을 할 필요는 없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법의 개정만으로는 이미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전자감시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미결수용자가 권리로서 전자감시를 요구하여 석방될 수 있게끔 바뀔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미결수용자를 위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관할 법원에 사법적인 권리주장이 용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재판확정 전의 전자감시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으나, 후행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적인 방법들, 전자감시의 운용주체, 비용부담 등 많은 과제들이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 _____, 형법총론, 홍문사, 2011.
- 법무부, 프랑스형사소송법, 법무부, 2011.
- _____, 범죄백서 2013, 법무부, 2014.
-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3.
- 손동권/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 이순래/박철현/김상원,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그린, 2011.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한영수/강형성/이형섭, 한국전자감독제도에론, 박영사, 2013.
- Ira J. Silverman, *Corrections-A Comprehensive View 2. ed.*, Wadsworth, 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Inc., 2001.
- Philip L. Reichel, *Corrections-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Allyn & Bacon 2 edition, 2001.
- Michael Tony & Richard S. Frase, *Sentencing and Sanctions in Western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2. 학술지

- 김태명, “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44쪽.
-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45-668쪽.
-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9집, 한국법학회, 2008.2,

221-241쪽.

윤지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8권, 한국피해자학회, 2010.10, 375-400쪽.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11-343쪽.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01-936쪽.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137-162쪽.

정신교,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2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75-403쪽.

정 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형사정책연구원, 1999, 185-209쪽.

정영훈,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결정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Vol.434, 대한변호사협회, 2013.6, 118-134쪽.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351-370쪽.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교정연구* 제42호, 한국교정학회, 2009, 75-107쪽.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교정연구* 제44호, 한국교정학회, 2009, 7-30쪽.

3. 신문기사

심새롬, “옥중사망 10명 중 셋은 형집행정지 신청자”, *중앙일보*, 2013.10.4.

백영미, “재계총수 구속집행정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뉴시스*, 2013.8.21.

홍성원, “구속·형집행기간 도망자 급증”, *헤럴드경제*, 2010.10.7.

4. 전자문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17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검색일:
2014.8.30.

[Abstract]

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Tool of Freedom

—Based on the Pretrial Detention Mitigation—

Shin, Jin-Su*

The current system of Electronic Monitoring is only intended for the convicted person who committed a particular crime. That means, when a convicted person who committed murder, kidnapping, sexual assault, robbery is selected as the subject of Electronic Monitoring, he or she is obliged to wear an electronic anklet as of a handling of public security measure for the surveillance in society when leaving prison at the expiration of the prison term or being released on parole.

The origi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 be foun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e early stage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t didn't intended for violent criminals such as sexual assault like Korea. Several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Portugal chooses a house arrest b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rather than a pretrial detention, because the pretrial detention is not only disadvantageous to the defense right of the accused or defendant but also in terms of the cost. In particular, for the mitigation of the pretrial detention before trial decision,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s an imprisonment as an unavoidable last resort by defining the indictment without detention firs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cond, and the imprisonment as the final resort in express terms.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importance of trial, Korea is encouraged to introduc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e defense right of the defendant out of the practice of imprisonment, which will be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in the criminal justice.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Criminology

[Key Word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Pretrial Release, Criminal Justic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Community Correction